

# 기존화학물질 [ ] 제조 [ ] 신고서 [ ] 수입 [ ]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신고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 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 / 팩스번호: )

신고사항	화학물질명	
	고유번호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
	①연간 제조(수입)(예정)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	[ ] 1톤 이상 10톤 미만 [ ] 10톤 이상 100톤 미만 [ ]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[ ] 1,000톤 이상 [ ] 고분자화합물 [ ] 나노물질 [ ] 현장분리중간체 [ ] 수송분리중간체
	②분류·표시	분류 표시사항
용도	③분류체계	
	④범주 및 구체적 용도	[ ] 산업적/전문적 용도 ( ) [ ] 소비자 용도 ( )

⑤변경신고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수입자 (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⑥상호(명칭)	⑦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⑧대표자	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⑩수입국

⑪수탁자 (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 ] 제6조의2제2항 에  
[ ] 제6조의2제4항  
따라 [ ] 제조 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[ ] 신고  
[ ] 수입 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[ ] 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 가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1부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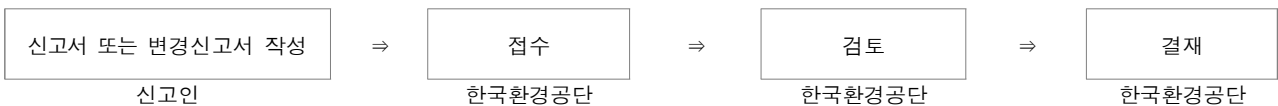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.
- ②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.
- ③란은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.
-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,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·작성합니다.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.
-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⑤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⑥란~⑩란은 신고인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입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,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⑪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